추가약정서

(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)

채무자는 우리금융저축은행(이하 "저축은행" 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 (목적)

이 약정서는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,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잔액 ^{주1)} (全금융기관 합계)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* 주1)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

제2조 (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)

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·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^{주2)}하지 않기로 합니다.

* 주2) 매매, 증여,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,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

제3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

제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